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

## (전승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-104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. 11. 23.

발의자 : 전승학, 강희향, 김윤정  
김효식, 문정애, 송병길,  
신종갑, 이봉수, 이필레  
허정행

### 1. 제안이유

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대한 교류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자매결연 등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규정(안 제3조)
- 나. 자매결연 등 체결 및 파기 시 의회동의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다.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- 라. 자매결연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)

### 3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

### 4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### 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7. 11. 27 ~ 12. 1(의견제출 없음)

나. 조례안 : 붙임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(이하 “국외도시”라 한다)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(이하 “자매결연 등”이라 한다) 업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자매결연 등 선정기준)** 자매결연 등 대상 국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자매결연 등의 제의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면적, 인구 및 행정,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
2. 산업,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
3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
4.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

- 5. 역사적,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
- 6.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

②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
**제5조(사전교류)**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.

② 구와 국외도시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.

**제6조(의회동의)**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및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**제7조(자매결연 등 체결)**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외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,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.

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,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,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.

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외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8조(교류사업의 지원)**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.

② 구청장은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**제9조(사후관리)**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·관리한다.

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, 협약서·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자매결연 등 파기)** 구청장은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.